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준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5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서준오 의원(1명)

찬 성 자: 김성준, 김현기, 남창진,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송도호,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만균,
정준호, 최재란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공공임대주택의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공개공지 부칙을 개정하여 공개공지 설치 기준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공지의 면적 기준 완화(안 제26조제7항 신설)
- 나. 공개공지 설치 기준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 명확화(부칙 제9247호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개 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과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대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 공지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9247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심의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공공주택 특별법</u> 」 제35조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과 대상이 아닌 건축 물이 같은 대지에 포함된 경우에 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통해 공개공지의 면적을 완 화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9247호 서울특별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서울특별시조례 제9247호 서울특별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 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변경허가 포 함),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기재사 항 변경 포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6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개정규정은 이 조 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 허가,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 신고가 의제되는 허가·결정·인 가·협의·승인·심의 등을 신청

<신 설>

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
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6조제7항을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9247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개정하고 제3조를 신설하여 공개공지 설치 기준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